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허용 사유 강화 》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93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99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허용 사유 강화 등(안 제31조 등)	4
나. 기타 제도 개선(안 제39조 등)	13

I.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0499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손명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9.

다. 회 부 일 : 2024. 10. 30.

2.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측면이 있음.

또한, 하도급의 원칙적 허용에 따라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업무를 하도급하여 특정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상주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하도급요건의 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하도급 제한을 특정 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도록 요구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1조제2항제2호,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나. 「형법」 개정('18.1.7)에 따라 벌금형도 집행유예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건설기술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안 제39조제5항제5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7조제1항 후단 신설).

4. 검토의견

가.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허용 사유 강화 등(안 제31조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 ③ (생략)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삭제>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신설>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하도급할 수

현행	개정안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기술인(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

현행	개정안
제9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1의2. (생략) 2. ~ 5. (생략) ③·④ (생략)	<u>다. 이하 같다)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⑦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서면 승낙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9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한 자</u> <u>1의3. (현행 제1호의2와 같음)</u> 2.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현행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¹⁾에 규정된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에서의 하도급 허용 요건을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고,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② 건설엔지니어링

1)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30호, 2019. 8. 8. 시행)

어링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은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제고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에서의 하도급 허용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및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안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기술인(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개정안
	다. 이하 같다)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서면 승낙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35조제4항²⁾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그런데, 현행법상의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가능 요건인 ‘발주청의 승인’에 대한 절차가 심도있는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경우가 많아,

발주청 및 수급인의 고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특정업체에게 장기간 수의계약 형태로 재하도급이 체결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의 관행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건설엔지니어링에서의 부실적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 요건을 현행 ‘발주청의 승인’에서 ‘발주청의 서면 승낙’ 및 ‘건설엔지니어링의 품질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재하도급의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에서의 하도급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건설엔지니어링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 등에 관한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4),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최근,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인천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⁵⁾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설계·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부실이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 바 있음.

또한, 설계·감리 분야의 하도급으로 인해 소방시설업체의 이익 감소 및 영세화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업자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가 부실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에서의 설계·감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⁶⁾ 이 시행(2020년 6월 9일)되고 있고,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5) ○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2022. 1. 11.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 하고 콘크리트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

○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2023. 4. 29.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판(슬래브)이 붕괴되는 사고 발생(인명 피해 無)

⇒ 주요원인: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021년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리 용역의 일부를 무분별하게 하도급하게 하여 용역 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저가 하도급 계약을 양산하도록 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⁷⁾한 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건설엔지니어링에서의 하도급 허용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하도급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간의 협업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설계 분야의 경우에는 지반조사·측량·교통조사분석 등 특정 전문분야에 특화된 전문업체를 하도급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설계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있고,

2024년 11월 현재 약 4,000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하도급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중소기업 업체가 약 3,800개사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해 볼 때,

7) '건설엔지니어링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2021.12.23. 국민권익위원회)

8) 연간 건설Eng. 물량('23년 말, 6.4조)의 약 82% 이상은 상위 200개사 실적으로, 그 외 3,800개 기업은 하도급 및 지역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업 영위(자료: 건설엔지니어링 협회)

개정안과 같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계약 물량 감소로 영세 건설엔지니어링 업자 대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관련 업계의 심각한 붕괴가 우려되므로, 건설엔지니어링 중 조사·설계·측량 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안 제91조제1호의2는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제36조제6항⁹⁾을 위반하여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주기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데,

하도급의 승인 권한을 가진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특정업체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시 상주기술인을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발주청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관행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9)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6조(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제한) ⑥ 발주청은 특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하도급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상주기술인(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현장에서 이탈하여 근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기타 제도 개선(안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생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 <u>금고 이상의 형</u>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 ----- ----- -----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먼저, 안 제39조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결격사유¹⁰⁾ 중 「형법」 제129조 등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10)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유예된 형의 종류를 금고 이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¹¹⁾에서는 ① 이 법 또는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②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¹²⁾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

-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각각 규정하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도 건설사업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형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¹³⁾해진 바가 있는데, 이를 현행법 체계에 적용할 경우 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닌 관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②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상(情狀)에 참작¹⁴⁾할 만한 사유가 있어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3) < 「형법」 상 집행유예 대상(제62조 제1항) 변경 >

당초 (∼'18.1월)	변경 ('18.1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u>벌금(500만원 이하)</u>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벌금형보다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사유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¹⁵⁾한 바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국토교통부도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음, 안 제7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관이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때,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¹⁶⁾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임.

-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15) 2023. 6. 12.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511호) 참조.

16)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 강화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를 고려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관련 타 입법례 】

법률명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u>「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u>
「건축사법」	제30조(보고·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u>「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u>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u>「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u>

문 의 처

02)6788-5591